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6일

환경부장관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」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사유

「화학제품안전법」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·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필수 안전기준 강화

1)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·표시기준 강화

- 세정제,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 물질 안전기준 추가
-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(탈취제·표백제, 미용 접착제, 인공 눈 스프레이)

2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

-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(캡슐형 세탁제품→캡슐형 제품)

3)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 적용범위 명확화

- 승인 대상 제품인 ‘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’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‘가습기’ 정의 추가

나. 규제 개선·합리화

- 1)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
 -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,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
- 2)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
 -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,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
- 3) 대용량 제품의 용기·포장 안전기준 개선
 -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·누수시험 면제, 중량·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
- 4)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
 - 세탁세제·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·천연 구분없이 적용

다. 기타 사항

- 1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
- 2)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·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
- 3)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
- 4)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,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제품관리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다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전자우편 : su0529@korea.kr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
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 → 행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(전화 044-201-6826, 전자우편 su0529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